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부담없는 보험료로 사망뿐 아니라 50% 이상 중증장해까지 실속있게 보장합니다.
- 특약 선택시 일상생활 재해 및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 고객 형편 및 목적에 맞게 순수형 또는 환급형 선택 가능합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병이 있어도 3가지(건강관련) 간편고지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간편고지에 관한 사항” 참조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고지에 관한 사항(2종(간편가입)에 한함)

- 2종(간편가입)의 경우,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고지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으며,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가입시 간편고지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습니다.
- 이 상품 가입 후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무)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 1종(일반가입))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반심사보험((무)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 1종(일반가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 구분 | |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주기 |
|--------------|-----|--------|----------------------|------------------------|----------|
| 1종 (일반가입) | 순수형 | 만15 ~ | 60, 70, 80, 90세만기 | 5, 10, 15, 20, 30년납 | 월납 |
| | 환급형 | 최대 70세 | | | |
| 2종 (간편가입) | 순수형 | 35 ~ | | | |
| | 환급형 | 최대 70세 | | | |

■ 가입한도

| | | |
|-----|--|--|
| 주계약 | 1종(일반가입) | 1,000만원~4,000만원 (500만원 단위) |
| | 2종(간편가입) | 1,000만원~2,000만원 (500만원 단위) |
| 특약 | (무)재해사망특약 2504 (무)생활재해보장특약 2504 (무)3대질병진단특약 2504 | 1,000만원~4,000만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주) 1. 특약의 경우 1종(일반가입)에 한하여 부가가능
 2. 특약의 경우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가입나이(상세)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
|-----------|-------------|-----------|-----------|----------|----------|
| | | 1종(일반가입) | | 2종(간편가입) | |
| | | 순수형 | 환급형 | 순수형 | 환급형 |
| 60세 만기 | 5,10년납 | 만15 ~ 50세 | 만15 ~ 50세 | 35 ~ 50세 | 35 ~ 50세 |
| | 15년납 | 만15 ~ 45세 | 만15 ~ 45세 | 35 ~ 45세 | 35 ~ 45세 |
| | 20년납 | 만15 ~ 40세 | 만15 ~ 35세 | 35 ~ 40세 | 35 ~ 40세 |
| 70세 만기 | 5,10년납 | 만15 ~ 60세 | 만15 ~ 60세 | 35 ~ 60세 | 35 ~ 55세 |
| | 15년납 | 만15 ~ 55세 | 만15 ~ 55세 | 35 ~ 55세 | 35 ~ 50세 |
| | 20년납 | 만15 ~ 50세 | 만15 ~ 50세 | 35 ~ 50세 | 35 ~ 45세 |
| | 30년납 | 만15 ~ 40세 | 만15 ~ 40세 | 35 ~ 40세 | 35 ~ 40세 |
| 80세 만기 | 5년납 | 만15 ~ 70세 | 만15 ~ 60세 | 35 ~ 70세 | 35 ~ 60세 |
| | 10년납 | | | | |
| | 15년납 | 만15 ~ 65세 | | 35 ~ 65세 | 35 ~ 55세 |
| | 20년납 | 만15 ~ 60세 | 만15 ~ 55세 | 35 ~ 60세 | 35 ~ 50세 |
| | 30년납 | 만15 ~ 50세 | 만15 ~ 50세 | 35 ~ 50세 | 35 ~ 45세 |
| 90세 만기 | 5년납 | 만15 ~ 70세 | 만15 ~ 60세 | 35 ~ 65세 | 35 ~ 60세 |
| | 10년납 | | | | |
| | 15년납 | 만15 ~ 65세 | | 35 ~ 55세 | 35 ~ 55세 |
| | 20년납 | 만15 ~ 60세 | 만15 ~ 55세 | 35 ~ 50세 | 35 ~ 50세 |
| | 30년납 | 만15 ~ 50세 | 만15 ~ 50세 | 35 ~ 45세 | 35 ~ 45세 |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 | | |
|-------------|--------------|--|
| 주 계 약 | 1종 (일반가입) |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2504(선택) +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 2504(선택) + 무배당 3대질병진단특약 2504(선택)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선택)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선택) |
| | 2종 (간편가입) |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선택)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선택)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순수형 : 없음 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플리스적립금 |
| 장애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500만원 |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플러스적립금은 계약자적립액과 예정 계약자적립액의 차이인 초과적립액을 말합니다.
- 4. 플러스적립금은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5. 신공시이율Ⅳ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0.5%이며,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Ⅳ를 적용합니다.

※ 플러스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플러스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플러스 사망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플러스보험금 |
| 플러스 장애 보험금 | 플러스보험기간 중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플러스보험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플러스보험금의 50% |

- 주) 1. 플러스보험기간이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 후부터 10년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2.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플러스적립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스보험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플러스사망보험금 및 플러스장애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플러스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4. 플러스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지급구분 | 지급 사유 | 지급액 |
|------------|--------------------------------|---------|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 무배당 생활재해보장특약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지급구분 | 지급 사유 | 지급액 |
|-------------------|---|-----------------------|
| 재해장해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입원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일당 120일 한도) | 5천원 |
| 재해골절 (차이피절제외)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10만원 |
| 재해깁스치료 (부목제외)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깁스 (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5만원 |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재해골절(치아과절제외)보험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치아과절제외)보험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치아과절제외)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 보험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재해깁스치료(부목제외) 보험금은 1회만 지급합니다.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무배당 3대질병진단특약 2504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
|---------------|--|---------------------|---------------------------|-------|
| 3대질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다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구분 | 암,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 | 소액암 |
| | | 보험계약일 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50만원 |
| | | 보험계약일 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100만원 |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신관서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소액암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6. 3대질병진단보험금의 경우,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 |
|--------|--|
| 가입대상 | 이륜자동차 운전자(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 |
| 부담보 범위 |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

- 주) 1.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내연기

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 | |
|--------------|--|
| 대상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
| 지정대리청구인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 |
|--------------|--|
| 대상계약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2종(간편가입)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위하여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

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사유 \ 구비서류 | 신분증 | 도장 | 해당진단서 | 비고 |
|-------------|-----|----|-------|---|
| 만기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 ■ 질병 진단 확정시는 해당 질병 진단서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시 | ○ | ○ | ○ | |
| 장해시 | ○ | ○ | ○ | |
| 진단시 | ○ | ○ | ○ | |
| 입원시 | ○ | ○ | ○ | |
| 골절시 | ○ | ○ | ○ | |

| | | | | |
|--------|---|---|---|--|
| 깁스치료시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깁스치료시는 깁스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해약시 | ○ | ○ | | |
| 환급금대출시 | ○ | ○ | | |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50%이며, 특약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25%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o 1종(일반가입)

| 구분 | | 20세 | 40세 | 60세 |
|-----|----|----------|----------|----------|
| 사망률 | 남자 | 0.000370 | 0.000980 | 0.004280 |
| | 여자 | 0.000310 | 0.000630 | 0.001590 |

o 2종(간편가입)

| 구분 | | 40세 | 60세 | 70세 |
|--------------|----|----------|----------|----------|
| 무배당 간편고지 사망률 | 남자 | 0.001410 | 0.007598 | 0.019228 |
| | 여자 | 0.001101 | 0.003102 | 0.008103 |

③ 적용이율

적용이율이란 체신관서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주계약에 한함)는 신공시이율I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주계약에 한함)의 신공시이율IV가 변동될 경우 적용이율도 변경됩니다.

④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등이 하락하여도 체신관서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주계약에 한함)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504는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o 1종(일반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80세만기, 20년납 기준, 단위 : 원)

| 경과 기간 | 순수형 | | | 환급형 |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 | 최저해약환급금 | 신공시이율IV | | 최저해약환급금 | 신공시이율IV |
| 1년 | 126,000 | 10,400 | 10,400 | 211,200 | 45,640 | 45,640 |
| 3년 | 378,000 | 239,500 | 239,500 | 633,600 | 449,120 | 449,120 |
| 5년 | 630,000 | 475,500 | 475,500 | 1,056,000 | 867,800 | 867,800 |
| 7년 | 882,000 | 677,500 | 677,500 | 1,478,400 | 1,242,200 | 1,242,200 |
| 10년 | 1,260,000 | 992,100 | 992,100 | 2,112,000 | 1,833,400 | 1,833,400 |
| 20년 | 2,520,000 | 2,117,500 | 2,117,500 | 4,224,000 | 4,072,400 | 4,072,400 |
| 30년 | 2,520,000 | 1,966,100 | 1,966,100 | 4,224,000 | 4,640,800 | 4,640,800 |
| 40년 | 2,520,000 | 0 | 0 | 4,224,000 | 4,224,000 | 4,224,000 |

o 2종(간편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80세만기, 20년납 기준, 단위: 원)

| 경과 기간 | 순수형 | | | 환급형 |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 | | 최저해약환급금 | 신공시이율IV | | 최저해약환급금 | 신공시이율IV |
| 1년 | 183,600 | 44,680 | 44,680 | 276,000 | 80,800 | 80,800 |
| 3년 | 550,800 | 374,140 | 374,140 | 828,000 | 601,300 | 601,300 |
| 5년 | 918,000 | 714,500 | 714,500 | 1,380,000 | 1,141,600 | 1,141,600 |
| 7년 | 1,285,200 | 1,019,000 | 1,019,000 | 1,932,000 | 1,632,900 | 1,632,900 |
| 10년 | 1,836,000 | 1,494,400 | 1,494,400 | 2,760,000 | 2,408,600 | 2,408,600 |
| 20년 | 3,672,000 | 3,182,500 | 3,182,500 | 5,520,000 | 5,327,600 | 5,327,600 |
| 30년 | 3,672,000 | 2,936,700 | 2,936,700 | 5,520,000 | 6,030,800 | 6,030,800 |
| 40년 | 3,672,000 | 0 | 0 | 5,520,000 | 5,520,000 | 5,520,000 |

주) 1. 위 예시된 최저해약환급금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 계약자적립액을 기초로 산

출된 금액으로 예정이율(2.5%)이 적용되어 계산되며, 향후
신공시이율Ⅳ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약환급금
입니다.

2. 위 예시된 신공시이율Ⅳ 적용 해약환급금은 2.50%의 신공
시이율Ⅳ가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금
액으로 신공시이율Ⅳ가 변경되면 위 예시된 금액도 달라집
니다. 또한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한 경우의 금액이
므로,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 예시된 금액
도 달라집니다.
3.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에는 해당 시점의 플러스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급형의 경우 만기시점 해약환급금에는
만기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